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6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                            | 4  |
| 가.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 4  |
| 나.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                            | 6  |
| 2. 조문별 검토 .....                                    | 9  |
| 가. 목적, 정의 등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 9  |
| 나. 공공개방자원 기본계획 및 이용지침(안 제7조 및 제8조) .....           | 15 |
| 다. 공공개방자원의 지정·등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 및 제17조) ..... | 17 |
| 라.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 19 |
| 마. 기타 규정(안 제16조 및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 28 |
| 바. 부칙 .....                                        | 3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강의 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등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

인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관련 정보 및 이용자의 사전 신청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함(안 제2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 가.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함)이 보유·관리하는 재산·물품 등의 자원(이하 “공공재산등”이라 함)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유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경제<sup>1)</sup>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현행 법률 체계에서 공공재산등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국·공유재산등”이라 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고 허가 또는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중·장기적 사용에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공공재산등을 단기간·비영리적 용도로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희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 이용’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공유재산등에 대한 현행 사

---

1)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임.

용·수익 절차의 예외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등”이라 함)은 국·공유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 및 물품의 대부 등에 관한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sup>2)</sup>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재산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사용·수익 절차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공공재산등의 본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

## 2)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30.>

아 그 적용 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본래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이용’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

## 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은 공공부문이 보유·관리하는 자원 중 공공개방자원 이용의 대상으로 지정한 자원을 공공개방자원으로 정의하면서(안 제2조),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9조),

국민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승인을 하고(안 제11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하고 있음.

그 외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 조 문  |                           | 규 정 사 항                                  |
|------|---------------------------|------------------------------------------|
| 제1조  | 목적                        | • 국민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                       |
| 제2조  | 정의                        | • 공공개방자원, 국민이용 등 주요사항 정의                 |
| 제3조  | 기본원칙                      | •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무사항 규정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
| 제5조  | 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 • 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
| 제6조  | 공공개방자 이용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 • 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
| 제7조  |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제8조  | 공공개방자원 이용지침               | • 이용에 관한 지침 고시, 행정기관등의 장은 준수             |
| 제9조  | 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           | • 공공개방자원을 지정, 정보시스템에 등록                  |
| 제10조 | 이용 신청                     | •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 이용 신청                     |
| 제11조 | 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            | •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 부정한 신청 등에 대한 취소·철회 가능 |
| 제12조 | 이용료의 징수                   | • 이용료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율적 규정                  |
| 제13조 | 이용료의 감면                   |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지역주민 등 감면               |
| 제14조 |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 • 행정기관등의 장의 장애인의 우선적 이용을                 |

| 조 문  |                          | 규 정 사 항                                            |
|------|--------------------------|----------------------------------------------------|
|      | 지원                       | 위한 조치 의무                                           |
| 제15조 | 원상회복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 이용기간 종료 또는 승인 취소·철회된 경우, 원상반환, 재산상 손해 발생시 가산금 징수 |
| 제16조 |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 • 시설·물품 가액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
| 제17조 |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 제18조 | 실태조사 및 평가                | • 공공개방자원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
| 제19조 | 민간협력                     | • 민간단체·협회등의 자원의 개방·공유 협조 요청                        |
| 제20조 | 면책                       | • 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 불이익처분 면책                     |
| 제21조 | 권한의 위탁                   | •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      |                          | 부 칙                                                |
| 제1조  | 시행일                      |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제2조  | 이용 승인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 •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정안의 개별 조문과 관련하여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을 함께 다루고 있어, 제정안 제6조·제8조의 경우에는 모든 보유·관리주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감안하여 개별 조문의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의 경우 이용료의 감면(제13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과 제정법의 조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임.<sup>3)</sup>

3) 참고로, 동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964호, 2026. 3. 31. 발의)이 발의되었음.

## 1. 조문별 검토

### 가. 목적, 정의 등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공공개방자원”, “공공개방자원 이용”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안 제2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 제 정 안                                                                                                                                                                                                                                                                                                                                                                                                                                                                                                                                            |
|--------------------------------------------------------------------------------------------------------------------------------------------------------------------------------------------------------------------------------------------------------------------------------------------------------------------------------------------------------------------------------------------------------------------------------------------------------------------------------------------------------------------------------------------------|
| <p><b>제1조(목적)</b>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li><li>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li><li>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li>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ol></li></ol> |

## 제 정 안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이나 물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말한다.

4.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공공개방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 이용권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개방자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으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공개방자원”의 범위(안 제2조제3호)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을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이

나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개방자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보다 그 대상과 범위가 넓은 개념임.

보유·관리 주체, 용도 및 근거 법령 등이 상이한 다양한 시설·물품 등을 ‘공공개방자원’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의 특성과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개방자원으로의 지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쟁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 “공공개방자원 이용”의 의미(안 제2조제4호)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개인·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개방자원 이용은 공공개방자원을 단기간·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 또는 물품의 사용·수익이나 대부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등과 구별되는 개념임.

### < 공공개방자원 이용 승인과 기존 법률상 개념 비교 >

| 구분   | 공공개방자원 / 이용승인                                  | 국·공유재산, 물품 / 사용허가, 대부계약                |
|------|------------------------------------------------|----------------------------------------|
| 소관법률 | 제정안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물품관리법」      |
| 목적   |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재정수입 확보 및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대국민 대상 사용허가 및 대부 |
| 이용목적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비영리·영리 목적 이용 가능                        |
| 사용기간 | 단기간                                            | 일반적으로 중·장기 사용                          |
| 방식   |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승인<br>(서비스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 경쟁입찰(온비드 시스템)<br>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 가능      |

다만, ‘단기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개방자원 이용의 적용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등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국·공유재산등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고 허가 또는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중·장기적 사용에 적합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기존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공공개방자원의 단기적·비영리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정안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4) 법령 제정 등의 협의(안 제6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률 간 상호 충돌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행정기관등”에는 법률을 소관하지 아니하는 국회·법원 등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 의무의 주체를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권한을 갖는 중

양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기관등"의 범위(안 제2조제1호·제2호)]

| 행정기관등 |          |      |                              |
|-------|----------|------|------------------------------|
| 행정기관  | - 헌법기관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 중앙행정기관 |      | - 지방공사·공단                    |
|       | - 지방자치단체 |      | - 특수법인                       |
|       |          |      | - 각급 학교                      |
|       |          |      | - 그 밖의 기관                    |

## 나. 공공개방자원 기본계획 및 이용지침(안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7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 제 정 안

**제7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개방자원 등록 및 이용 현황
3. 공공개방자원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물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개방자원 이용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에 관한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국·공유재산 관리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쟁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술하는 안 제9조(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에서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각각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국회규칙등”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등보다 하위의 규범적 효력을 갖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을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지침의 의무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공공개방자원의 지정·등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을 공공개방자원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공공개방자원 및 그 이용조건 등을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안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신청을 위한 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제 정 안                                                                                                                                                                                                                                                                                                                                                                                                                                                                                                                                                                                                                                                                                                                                                                                                                       |
|-----------------------------------------------------------------------------------------------------------------------------------------------------------------------------------------------------------------------------------------------------------------------------------------------------------------------------------------------------------------------------------------------------------------------------------------------------------------------------------------------------------------------------------------------------------------------------------------------------------------------------------------------------------------------------------------------------------------------------------------------------------------------------------------------------------------------------|
| <p><b>제9조(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b>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용도, 이용 기간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개방자원 및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17조의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b>제17조(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개방자원 지정 현황</li> <li>2. 이용 용도, 이용 시간, 이용료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li> <li>3. 공공개방자원의 장애인 체육활동 가능 여부</li> <li>4. 이용의 신청·승인 및 취소·철회 절차</li> <li>5. 이용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사항</li> </ol>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p> |

## 제 정 안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개방 가능 여부 및 이용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은 개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시설·물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개방자원으로의 지정 여부 및 이용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헌법기관·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한 공공개방자원 및 그 이용조건 등을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개방자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개방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쟁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라.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신청(안 제10조)을 받은 경우 이용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받은 공공개방자원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개방자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공공개방자원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3조).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 보수·물품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활용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 승인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개방자원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 정 안                                                                                                                                                                                                                                                                                                                                                                                                                                                                                                                                                                                                                                                                                                                                                                                                                                                                                                    |
|----------------------------------------------------------------------------------------------------------------------------------------------------------------------------------------------------------------------------------------------------------------------------------------------------------------------------------------------------------------------------------------------------------------------------------------------------------------------------------------------------------------------------------------------------------------------------------------------------------------------------------------------------------------------------------------------------------------------------------------------------------------------------------------------------------------------------------------------------------------------------------------------------------|
| <p><b>제10조(이용 신청)</b>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p> <p><b>제11조(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b>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 조건(이하 이 조에서 “이용 조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li> <li>2. 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li> <li>3. 행정기관등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li> <li>4.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li> <li>5.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6. 이용 승인한 공공개방자원을 행정기관등의 장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li> </ol> <p>③ 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이용료의 징수)</b>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

## 제 정 안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에 해당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
3. 공공개방자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개방자원에 한정한다)이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보수, 물품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

## 제 정 안

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공 개방자원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공공개방자원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공개방자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용료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이용 신청, 이용 승인 및 취소·철회(안 제10조 및 제11조)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개방자원 지정 시 정한 이용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전제가 되는 ‘이용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개방자원 이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개방자원의 지정 → 이용 신청 → 이용 승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에 앞서 이용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이용료의 징수(안 제12조)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기존의 국유재산등 및 그 사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공개방자원’ 및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별도로 정의하고,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체계상 별도의 쟁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등”이라 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개방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산정·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

면,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개방자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산정·징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개방자원의 유형에 따른 이용료 산정·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이용료의 감면(안 제15조)

제정안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이용을 신청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재난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구나 공공개방자원에 보편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안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별표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sup>4)</sup>, 공공개방자원 중 국유재산에 대하여 제정안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sup>5)</sup>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4)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4조)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보수·물품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활용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 5) 의안번호 221796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2026. 3. 31. 발의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설·물품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개방자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14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선 이용의 구체적인 적용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공공개방자원은 한정된 시간과 수량의 범위에서 다수의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우선 이용이 일반이용자의 이용 신청 및 승인과 어떠한 관계에서 적용되는지,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이용 순위 자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제도의 일관된 운영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가산금의 징수(안 제15조)

제정안 제13조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 승인이 취소·철회된 경우 해당 자원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sup>6)</sup>, 공공개방자원의 지속적인 개방·이용을 위해서는 이용 과정에서 해당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반환 의무 및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6) 「국유재산법」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마. 기타 규정(안 제16조 및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공개방자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공공개방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또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단체·협회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 제정안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제 정 안

**제16조(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나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개방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협력)**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면책)** ①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16조)

제정안 제16조는 일정 규모·금액 이상의 공공개방자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품의 훼손이나 각종 사고 등에 따른 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자원의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18조)

제정안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공공개방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개방자원은 각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개방자원의 지정·이용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평가 결과가 개별 행정기관등의 공공개방자원 지정·운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의 대상·항목·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여건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민간협력(안 제19조)

제정안 제19조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기업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자원의 개방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요의 발굴,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민간협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면책(안 제20조)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제정안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공개방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만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바. 부칙

| 제 정 안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이용 승인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칙 제2조는 이용 승인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법 시행 이후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 전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이용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쟁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7